



재해개요

- 2022. 7. 4.(월) 09:03분경 경상북도 □□읍 소재 ○○○ 현장에서, △△△ 소속 재해자가 파쇄된 콘크리트를 싣기 위해 덤프트럭(2.5 Ton) 운전을 하다가 잠시 내려 휴식을 취하던 중, 도로경사로 인해 이동한 덤프트럭과 주택 벽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**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미실시**
 - 경사가 있는 장소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,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
- **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접촉 방지 조치 미흡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·지휘 미실시**
 - 덤프트럭(구내운반차)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히는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접촉방지조치 미실시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지정하지 않았으며, 통제 등 조치 미실시



재해예방 대책

- **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실시**
 - 경사가 있는 장소에서 덤프트럭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
- **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접촉 방지 조치 및 작업지휘자 지정·지휘 실시**
 - 덤프트럭(구내운반차)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접촉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
 -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사용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 및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